

PART 16

장기요양보험료



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

01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?

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(노인)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연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-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,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반대 급부인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금의 성격이 있습니다.
-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그 사용자(수급자)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.
-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합니다. 따라서 장기요양 보험료의 납부·고지, 독촉 등은 건강보험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.

02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납부합니다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.
- 장기요양보험 납부 대상자: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
 -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
 - ※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.
- 다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7조제4항, 「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」 제3조의2에 의거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,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- ※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.

03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? **변경**

- 장기요양보험료 산정
 - 장기요양보험료 = (건강보험료 - 경감 또는 면제 비용) × 장기요양보험료율(12.27%)
※ 건강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장기요양보험료는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, 보험료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(납부할 보험료)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.
- 통합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.

0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 **변경**

- 장기요양보험료는 차년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 입방식으로, 법적·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 위원회에서 적정수가,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원칙의 균형을 고려하여 차년도 보험료율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.
※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
 - 2008.7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4.05%
 - 2009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4.78%
 - 2010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6.55%
 - 2018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7.38%
 - 2019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8.51%
 - 2020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10.25%
 - 2021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11.52%
 - 2022.1월부터: 건강보험료의 12.27%

0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.
 -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%이며,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(6종)

참고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구분	경감적용 장애등급	적용요건 연령, 소득·재산 등	증빙서류
해당세대(장애인)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고려 안함	장애인등록증 등

※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경감

참고

희귀난치성질환자의 범위

- ※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경감
- ※ 「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0호
- ※ 비고 :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름

06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(지역 및 직장)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합니다.
 -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.
 -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경감합니다.
 -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,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.
 - 또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.
- 건강보험료가 경감된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를 다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.

07 1,000원 미만의 장기요양보험료 등 소액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
- 장기요양보험료는 {건강보험료×장기요양보험료율}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따라 1,000원 미만 소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.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6조3(소액 처리)에 따라, 1,000원 미만인 경우(제38조 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제외)에는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 - 다만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08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납부할 수 있나요? **변경**

-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{건강보험료+장기요양보험료} 형태의 합계액(납부할 보험료)이 고지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구분 표기된 금액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제2항에 의해 “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, {건강보험료 + 장기요양보험료} 형태의 합계액(납부할 보험료)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.